

건신상담연구소 운영 규정

제정 2017년 8월 24일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건신대학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학칙 제94조의 ⑥에 규정된 건신상담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 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- ① 연구소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 및 수립
- ② 상담 관련 교육 지원 사업
- ③ 상담 연구 출판 사업
- ④ 상담 훈련생 교육 프로그램

제3조(조직) ①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연구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소장은 부소장, 소속 연구원 등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신상담연구소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.)를 둘 수 있다.

- ② 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둔다.

제5조(재정) 연구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은 자체조달(특강 및 교육 프로그램 수입금, 기부금, 기타 보조금)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연구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본교 교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제6조(회계연도) 연구소의 회계 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 연도에 준한다.

제7조(보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문기관 및 대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이 규정 제정 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